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231
----------	-------

발의연월일 : 2026. 3. 4

발 의 자 : 이용우 · 신장식 · 장철민
김 윤 · 민병덕 · 임미애
김남희 · 김남근 · 한준호
백승아 · 전종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일체의 단체행동을 금지하여 교사와 공무원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실제 OECD 가입 국가 대부분은 하위직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행위에 불과함. 이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ILO는 거듭하여 우리 정부에 교사나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여 왔음.

이에 지방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가능하도록 하여, 공무원에게도 헌법에 따른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것임(안 제57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28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34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33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59조까지”를 “제56조까지, 제57조의2, 제5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 및 제5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아니한다”로 한다.

제57조를 삭제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1. 정치적 견해 표명 및 정당·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
2. 「정당법」에 따른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에 대한 가입 및 활동
3.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 후원회 또는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 기부

4. 정당의 당내 경선 참여 및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입후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③ 공무원은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근무시간 중 정치활동을 하는 행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예산, 그 밖의 관용물을 정치활동에 이용하는 행위
3. 직무상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정치적 의사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제58조를 삭제한다.

제82조를 삭제한다.

제83조 중 “·제43조 또는 제58조를”을 “또는 제43조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1조,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 제82조 및 제83조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 ----- ----- ----- ----- ----- ----- ----- <u>제56조까지, 제57조의2, 제59조</u> ----- ----- -----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1조 및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 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 및 제5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 -----아니한다.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① 공무	<삭 제>

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모집하게 하는 행위 또는 공공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

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
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
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정
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
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7조의2(공무원의 정치활동 보

장)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
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
야 하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1. 정치적 견해 표명 및 정당·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
대의 의사표시

2. 「정당법」에 따른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에 대한 가
입 및 활동

3.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
당, 후원회 또는 정치인에 대
한 후원금 기부

4. 정당의 당내 경선 참여 및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입후보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
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
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
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
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하는 행위

5. 그 밖에 「공직선거법」 제5
8조제1항 단서의 각 호에 해
당하는 행위

③ 공무원은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근무시간 중 정치활동을 하
는 행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예산, 그 밖의 관용물을
정치활동에 이용하는 행위

3. 직무상의 지위나 권한을 이
용하여 타인에게 정치적 의사
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영향력
을 행사하는 행위

<삭 제>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조합업무를 전임(專任)으로 하려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 지방의회의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2조(정치 운동죄) ① 제57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삭 제>
제83조(벌칙) 제42조·제43조 또는 제58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3조(벌칙) -----또는 제43조를----- ----- ----- -----.